거창군 Geochang County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734호 2020. 1. 22.(수)

거창사랑거창

선결	기관의 장

고 시

제2020-9호 거창 수승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
제2020-11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고시 ····· 9
제2020-12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2-65호선외1개소) 결정(변경) 정정 고시 ····· 10

공 고

제2020-96호 『거창위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보상(변경)계획 열람 공고 ····· 11
제2020-100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31
제2020-101호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 34
제2020-106호 공동주택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위탁지정 공고 ····· 39
제2020-108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 40
제2020-109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70
제2020-115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7호선)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 71
제2020-118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3
제2020-120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89

회 람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고시 제2020 - 9호

거창 수승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7일

거 창 군 수

1. 관광지명 : 거창 수승대 관광지
2. 위 치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강천리 일원
3. 지정면적 : 297,679㎡(변경없음)
4. 사업기간 : 1986년 ~ 2025년
5. 시 행 자 : 거창군수
6. 관련도서 및 열람방법 : 관련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는 거창군청 문화관광과(☎055-940-344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이 열람가능합니다.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내용

구 분	토지이용계획변경(㎡)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		비 고 (구성비)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총 계	297,679	297,679	59	64	15,949.6	16,048.6	100
공공편익시설지구	25,581	25,583	18	23	3,248.6	3,347.6	8.6
숙박시설지구	1,078	1,078	1	1	2,083	2,083	0.36
상가시설지구	5,696	5,696	11	11	1,530	1,530	1.91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58,222	58,225	28	28	9,088	9,088	19.56
기타시설지구	207,102	207,097	1	1	-	-	69.57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계획

구 분		토지이용계획(㎡)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297,679		297,679	64	16,048.6	
공공편익시설지구	소 계	25,581	증) 2	25,583	23	3,347.6	
	관리사무소	3,243		3,243	1	345	
	취사장	199		199	2	167	
	화장실	535		535	5	369	
	샤워장	157	증) 80	237	4	134	
	상수도	288		288	1	196	
	오수처리장	216		216	2	366	
	다목적광장	3,924		3,924	2	1,600	
	도 로	12,178	감) 202	11,976	-	-	
	주차장	4,391		4,391	2	50	
	안내소	450	증) 27	477	2	88.6	
	식수대		증) 97	97	2	32	
숙박시설지구	소 계	1,078		1,078	1	2,083	
	여관 및 복합시설	1,078		1,078	1	2,083	
상가시설지구	소 계	5,696		5,696	11	1,530	
	상 가	2,753		2,753	4	1,267	
	매 점	501		501	2	180	
	전통시장	2,442		2,442	5	83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소 계	58,222	증) 3	58,225	28	9,088	
	모험시설	1,655		1,655	1	660	
	간이수영장	11,001		11,001	-	-	
	썰매장	3,596		3,596	1	1,440	
	장비보관소	39		39	1	37	
	어린이놀이시설	3,888		3,888	1	1,550	
	목재체험장	4,472	감) 12	4,460	1	1,422	
	조경휴게지	5,791		5,791	2	2,360	
	구연서원	7,459		7,459	9	296	
	요수정	79		79	1	35	
	원각사	1,436		1,436	6	250	
	야외공연장	4,237		4,237	2	943	
	야영장	2,586		2,586	-	-	
	오토캠핑장	11,983	증) 15	11,998	3	95	
기타시설지구	소 계	207,102	감) 5	207,097	1	-	
	자연취락용지	11,679		11,679	-	-	
	무지개다리(현수교)	233		233	1	-	
	녹 지	195,190	감) 5	195,185	-	-	

❍ 조성계획(변경) 내용 및 사유

▨ 공공편익시설지구

1) 샤워장(2개소 증설)

▢ 변경내용 및 사유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비 고
부지면적(㎡)	157	237	증) 80	시설 조성현황을 반영하여 샤워장 2개소 증설	
건축연면적(㎡)	80	134	증) 54		
시설동수(동)	2	4	증) 2		

2) 안내소(1개소 증설)

▢ 변경내용 및 사유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비 고
부지면적(㎡)	450	477	증) 27	오토캠핑장2 및 목재체험장 진입도로에 안내소 신설	
건축연면적(㎡)	75.6	88.6	증) 13		
시설동수(동)	1	2	증) 1		

3) 식수대(2개소 증설)

▢ 변경내용 및 사유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비 고
부지면적(㎡)	-	97	증) 97	오토캠핑장2부지내 식수대 2개소 신설	
건축연면적(㎡)	-	32	증) 32		
시설동수(동)	-	2	증) 2		

4) 도로(감소)

▢ 변경내용 및 사유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비 고
부지면적(㎡)	12,178	11,976	감) 202	오토캠핑장2 진입도로에 현황 여건 및 안내소 설치를 위한 면적 감소	
건축연면적(㎡)	-	-	-		
시설동수(동)	-	-	-		

▨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

1) 오토캠핑장(증가)

▢ 변경내용 및 사유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비 고
부지면적(㎡)	11,983	11,998	증) 15	오토캠핑장2 및 목재체험장 진입도로 변경에 따른 오토캠핑장 면적 증가	
건축연면적(㎡)	95	95	-		
시설동수(동)	3	3	-		

2) 목재체험장(축소)

▢ 변경내용 및 사유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비 고
부지면적(㎡)	4,472	4,460	감) 12	오토캠핑장2 및 목재체험장 진입도로 확폭에 따른 목재체험장면적 축소	
건축연면적(㎡)	1,422	1,422	-		
시설동수(동)	1	1	-		

▨ 기타시설지구

1) 녹지(축소)

▢ 변경내용 및 사유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변 경 사 유	비 고
부지면적(㎡)	195,190	195,185	감) 5	오토캠핑장2 및 목재체험장 진입도로 확폭에 따른 녹지면적 축소	
건축연면적(㎡)	-	-	-		
시설동수(동)	-	-	-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	수승대 관광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 휴양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97,679	-	297,679	1986.8.20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97,679	-	297,679	100.0	
계획관리지역	297,679	-	297,679	100.0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	지구의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수승대 관광지 개발진흥지구	관광 · 휴양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1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297,679	-	297,679	1986.8.20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변경)

구 분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97,679	-	297,679	100.00	
Ⅰ.관광휴양시설용지	76,908	증) 3	76,911	25.84	
Ⅱ.공 공 시 설 용 지	25,581	증) 2	25,583	8.59	
Ⅲ.녹 지 용 지	195,190	감) 5	195,185	65.57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시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252	8	단지내도로	84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	황산리 815번지 일원	일반도로		
변경	소로	2	252	8~12	단지내도로	54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	황산리 815번지 일원	일반도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2-252	소로 2-252	-도로 확폭 및 연장축소 L=84m → 54m(감 30m) B=8m → 8~12m	· 도로내 안내소 설치를 위한 도로확폭 및 현황여건을 고려한 연장축소

◉거창군 고시 제2020-11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1월 23일

거 창 군 수

1.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주차장	가조면 마상리 446-3번지 일원	2,213	감)148	2,065	경고103호 ('95.5.12)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주 차 장	◦ 면적 변경 - 위치 : 가조면 마상리 466-3번지 일원 - 면적 : 2,213㎡ → 2,065㎡(감)148㎡)	○ 분할측량에 따른 구적 오차 정정(구역변경 없음)

◉거창군 고시 제2020-12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2-65호선외1개소) 결정(변경) 정정 고시

거창군 고시 제2019-134호(2019.11.21.)로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2-65호선외 1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 착오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0년 01월 23일

거 창 군 수

※ 정정사항

○ 거창군고시 제2019-134호(2019.11.21.)호로 고시된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2-65호선외1개소)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에서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상 도로등급 기재 착오가 발생하여 정정함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정정)

가.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정정사항 적색표기)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변경	소로	2	65	8	국지도로	86	소로2-67	소로3-28	일반도로	-	-	도로등급 정정 (중로⇒소로)

2. 정정 내용 이외는 당초 거창군 고시 제2019-134호(2019.11.21.)로 고시한 내용과 같으며, 가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0 - 96호

『거창위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보상(변경)계획 열람 공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거창위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변경)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01월 16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거창위천 고향의강 조성사업

나. 위 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위천면 일원

다. 사업내용 : 하천정비 L=9.88km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건설과장)

2. 보상내용

가. 토 지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월계리 일원

나. 물 건 : 위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다.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편입토지 축소

※ 토지 등 세부내역은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거창군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 입법/공고/고시)에서 토지는 확인 가능함.

3.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01. 16. ~ 2020. 01. 3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2)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4. 보상금 협의 및 지급시기

- 미감정 토지 : 감정평가 후 개별 보상
- 감 정 토지 : 방문 시 개별 보상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산정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보상시기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물건별 보상금액 및 구비서류 등은 손실보상 협의요청과 함께 개별 통지할 계획입니다.

다. 보상방법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현금보상(계좌입금)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미감정토지 한) ⇒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지급 ⇒ 수용재결(보상협의 불성립 시) ⇒ 공탁 및 수용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창군청 건설과(하천담당)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로 갈음하며, 이해관계인은 권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 등 권리권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거창군청 건설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나. 보상시기는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보상계획 및 열람 안내문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 등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하오니 상기 열람 장소에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다.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편입면적(수량)과 지번은 추후 지적 분할 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라. 기 보상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비고란에 보상 이라 명기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에서 제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건설과 하천담당(☏ 055-940-3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상조서(토지명세)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비고
읍,면		리,동	(분할)	대장상	현실상	대장상	편입면적	주소	성명	
거창	마리	월계	103-1	답	답	42	42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 12나길20(공덕동)	조방자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08-1	천	천	438	438	서울특별시마포구만리재로 12나길20(공덕동)	조방자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09-1	천	천 (갈대밭)	803	80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12나길 20(공덕동)	전병균 (전진규제외)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14-1	답	답	417	417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46	거창유씨통사랑소종중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15-2	답	답	228	228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46	거창유씨통사랑소종중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18-4	답	답	807	807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149-3	남수용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19-1	답	답	172	172	서울특별시성북구돌곶이로 30가길8-8	하영호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20-6	답	답	215	215	서울특별시성북구돌곶이로 30가길8-8	하영호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20-5	답	답	331	33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30가길 8-8	하영호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20-4	답	답	50	50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65	유성종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22-3	답	답	83	83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65	유성종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99-1	답	답	631	631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65	유성종	보상
거창	마리	영승	781-2	답	답	522	522	거창군마리면영승중앙길 54-9	전순택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245-2	답	답	364	364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95	전연식	보상
거창	위천	장기	417-2 (417-6)	답	답	621	118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435, 103동4303호(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신철범	보상
거창	위천	장기	416-2 (416-6)	답	답	1,220	540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435, 103동4303호(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신철범	보상
거창	위천	장기	416-1 (416-5)	답	답	470	191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52-21	고현영농조합법인	보상
거창	위천	장기	417-1 (417-4)	답	답	895	22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52-21	고현영농조합법인	보상
거창	위천	장기	417-1 (417-5)	답	답	895	13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52-21	고현영농조합법인	보상
거창	위천	장기	418-1 (418-28)	답	답	1,165	20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30	경점분	보상
거창	위천	강천	98-8 (98-35)	답	답	923	25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98-8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보상
거창	위천	강천	98-8 (98-36)	답	답	923	39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98-8	영농조합법인 수승대발효마을	보상
거창	위천	강천	98-3 (98-33)	답	답	1,878	54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1172보람마을1107-204	정인균	보상
거창	위천	강천	98-2 (98-32)	도	경작지	128	21	경기도부천시원미구중동 1172보람마을1107-204	정인균	보상
거창	위천	강천	98-5 (98-34)	대	대	38	7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415	이경애	
거창	위천	강천	93-2	대	대	10	10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 415	이경애	

거창	마리	월계	113-4	답	답	1,498	1,498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46	거창유씨통사랑소종중	보상
거창	위천	남산	54 (54-1)	답	답	4,099	5	거창군거창읍상동6길17, 101동701호(유빌리지)	김덕선	보상
거창	위천	남산	26-2 (26-3)	답	답	2,403	18	거창군거창읍상동6길17, 101동701호(유빌리지)	김덕선	보상
거창	위천	남산	975-30	천	천	379	379	거창군거창읍상동6길17, 101동701호(유빌리지)	김덕선	보상
거창	위천	남산	975-13	답	답	674	674	거창군거창읍상동6길17, 101동701호(유빌리지)	김덕선	보상
거창	위천	남산	975-10 (975-105)	천	천	4,090	2,386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96-3	서분식 외1인	보상
거창	위천	남산	975-29	천	천	60	60	경북김천시황금동27-4 한신아파트47동1204호	김홍균 외1인	보상
거창	위천	남산	25 (25-1)	답	답	4,490	287	거창군거창읍소만2길62, 101-706(12블록소만주공A)	정성철	보상
거창	위천	남산	975-19	천	잡종지	131	131	거창군거창읍소만2길62, 101-706(12블록소만주공A)	정성철 외2인	
거창	위천	남산	975-31	천	경작지	1,167	1,167	거창군 거창읍 상동 31-22	정창환	보상
거창	위천	남산	167 (167-2:111, 167-3:863)	답	답	3,686	974	거창군 마리면 율리 797	정창환	보상
거창	위천	남산	975-6	천	천	570	570	거창군 거창읍 상동 31-22	정창환	보상
거창	위천	남산	167-1	답	답	661	661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235-10	정장환	보상
거창	위천	남산	164	답	답	1,103	1,103	거창군 위천면 남산리 151	경대석	보상
거창	위천	남산	산6 (산6-2)	임	임	55,853	106	거창군 위천면 은하리길 38	신용현 (거창신씨오위장종중)	
거창	마리	영승	1248-2	답	답	368	368	서울특별시강서구국회대로 59-25(화곡동)	정수현	보상
거창	거창	송정	산123-2 (산123-4)	임	임	2,380	1,014	서울도봉구번동411-28 거창군위천면황산1길97-12	신진범	
거창	마리	영승	산147 (산147-3)	임	임	31,401	56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64번길 48-1(대연동)	정형수 외4인	
거창	마리	영승	1359 (1359-1)	답	답	700.2	132.7	서울시서초구효령로18길6,202호2층(방배동,현영파크빌라)	전정식 (전병천)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57 (1357-1)	답	답	2,022.3	172.7	대구광역시남구희망로57, 204동601호(이천동,이천주공2단지)	윤계순 외1인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56 (1356-1)	답	답	955.5	3.5	거창군 마리면 영승1길 71-3	김숙희	
거창	마리	영승	1327 (1327-1)	답	답	5,632.4	139.5	부산광역시사상구백양대로 494번길38,112동803호 (주례동, 청구아파트)	강신국 외2인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26 (1326-1)	답	답	1,934.9	17.2	거창군 마리면 영승1길 39	이국재 외1인	
거창	마리	영승	1326 (1326-1)	답	답		8.6		이국재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26 (1326-1)	답	답		8.6		김민경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25 (1325-1)	답	답	1,873.3	130.2	거창읍 김천리 창남 1길 40, 104동 604호(김천주공아파트)	전병호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24 (1324-1)	답	답	5,760.4	470.4	거창군 마리면 영승 중앙길 61	전정규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23 (1323-1)	답	답	4,164.7	351.0	거창군 마리면 영승 중앙길 61	김윤순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20 (1320-1)	답	답	7,551.6	322.6	거창군 마리면 영승 중앙길 17	곽보수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19 (1319-1)	답	답	2,359.7	5.8	거창군 마리면 영승 중앙길 60-5	김광호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18 (1318-1)	답	답	4,893.2	203.2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53길 16, 3층(상인동)	장순옥 (장관덕)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15-42	천	천	18.0	18.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48번 가길 10(가야동)	정중한 (정순복)	
거창	마리	영승	1338 (1338-1)	답	답	1,471.9	43.2	거창군마리면풍계1길 438-9	김순분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340 (1340-1)	답	답	4,682.2	272.6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100	박명남	보상
거창	마리	율리	100-3 (100-8)	답	답	1,048.0	155.0	거창군 마리면 풍계2길 7	정수선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16-4 (816-6)	답	답	217.0	9	거창군거창읍강변로127, 1203호(한성시티빌) 경남통영시욕지면4-20	강신곤 (이승훈)	
거창	위천	남산	37-2 (37-4)	답	답	800.0	215	거창군 마리면 상율2길 74	김정구	보상
거창	위천	남산	38 (38-1)	답	답	2,639	63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 99, 205동 805호(남양동, 성원2차아파트)	정연용	보상
거창	위천	남산	45 (45-1)	답	답	1,987	57	인천시 계양구 새별로112번길 12, 403동 1701호(효성동, 현대아파트)	정희순	보상
거창	위천	남산	46	답	답	613	613	거창군거창읍상림리155-1 93 인천시계양구새별로112번 길12,403동1701호(효성동 ,현대아파트)	김기탁 (정희순)	
거창	위천	남산	3-1	답	답	1,079	1,079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로 50, 111동 1405호(달천동, 달천아이파크 4차)	이찬곤	
거창	위천	남산	104-1 (104-47)	주	주	200	22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	남산	104-46 (104-48)	대	대	320	21	위천면 거차2길 148	전병인	
거창	위천	장기	산18-2 (산18-3, 산18-4)	임	임	24,893	2,216	서울 성북구 정능동 598-79	김경근 외2인	
거창	위천	장기	23 (23-1)	임	임	1,078	45	부산시 사상구 사상로319번길 19-4(덕포동)	최영수 (최상기)	
거창	위천	장기	22-3 (22-6)	임	임	627	220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271-4, 104동 402호(도동, 진우공원빌리지)	하수근	보상
거창	위천	장기	22	임	임	1,788	533	거창군 거창읍 상동8길	신경애	보상

			(22-5)					15		
거창	위천	장기	112-5 (112-11)	대	대	384	33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	장기	120-3 (120-6)	전	전	185	1	대구광역시 남구 양지로 46(대명동)	박성호	
거창	위천	장기	120-1 (120-4, 120-5)	전	전	1,269	12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1401호(아진캐슬)	하철호	보상
거창	위천	장기	119-3 (119-7)	전	전	268	76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51	한윤달	
거창	위천	장기	137 (137-2)	전	전	927	42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14	이선이	보상
거창	위천	장기	203-3 (203-8)	전	전	791	106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12	서순애	보상
거창	위천	장기	202-2	천	천	486	486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87	신언복	
거창	위천	장기	197-1	천	천	169	169	거창군거창읍김천리96-10 경북구미시1공단로9길30-12,108동702호(공단동, 파라디아아파트)	신왕범 (이재규)	보상
거창	위천	장기	196-1	천	천	126	126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70	김복달	
거창	위천	장기	192-1	천	천	63	63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	정강동	
거창	마리	율리	839-2	답	제방	400	400	부산시남구지게골로52-15 ,101동1407호(문현동,벽산한성기린아파트) (010-4557-1182)	김기천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39-4	답	제방	239	239	부산시남구지게골로52-15 ,101동1407호(문현동,벽산한성기린아파트) (010-4557-1182)	김기천	보상
거창	마리	율리	930-1 (930-6)	답	답	944	26	경남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77-6	강재현	보상
거창	마리	율리	930 (930-5)	답	답	1,395	56	경남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65-21	정규하	보상
거창	마리	율리	928-1 (928-5)	답	답	1,559	152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2길 10	정연순	보상
거창	마리	율리	928 (928-4)	답	답	1,548	190	경남거창군마리면율리501 경남거창군마리면율리511	송만순(1/2) 정달용(1/2)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87 (887-3)	답	답	2,740	473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월화길 207-2	이창근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86-1 (866-5)	답	답	270	50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263	정재춘	
거창	마리	율리	886 (886-4)	답	답	2,038	403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501	송만순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85-1 (885-3)	답	답	3,159	489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501	송만순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85 (885-2)	답	답	1,191	75	경남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138-15	김차달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84-1 (884-3)	답	답	859	32	경남 거창군 마리면 풍계1길 138-15	김차달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84 (884-2)	답	답	1,006	12	경남 거창군 마리면 풍계2길 30-6	유종열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80 (880-2)	답	답	3,018	26	부산시남구동명로163번길 11 101호(용호동,화성빌라)	김종현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78-1 (878-5)	답	답	2,288	114	서울시강남구역삼로309, 105동1101호(역삼동,래미안팬타빌)	엄종식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78 (878-4)	답	답	1,998	217	인천광역시남동구구월로192, 1403동 1002호(구월동,구월힐테이트)	김홍희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96-3	하천	제방	172	172		이재근	

거창	마리	율리	895-3	답	제방	13	13	서울시강남구역삼로309, 105동1101호(역삼동,래미안팬타빌)	엄종식	보상
거창	마리	율리	896-1	하천	제방, 고수부	413	413		이재근	
거창	마리	율리	897-6	하천	제방	40	40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489	김기홍	
거창	마리	율리	897-4	하천	제방	582	582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489	김기홍	
거창	마리	율리	897-2	하천	제방, 고수부	863	863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489	김기홍	
거창	마리	율리	897-3	임야	고수부	317	317		김진희	
거창	마리	율리	897-1	하천	고수부	354	354		김진희	
거창	마리	월계리	316-1 (316-7)	답	답	962	391	부산시기장군.읍차성로344번길13 107동1104호(한신아파트)	임영자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07-1 (307-7)	답	답	1,905	44	경남거창군거창읍거열로4길82, 비동608호(궁전아파트)	윤귀언	
거창	마리	월계리	307-2 (307-8)	답	답	2,280	1,081	양산시주진1길43,102동1107호(주진동,로즈힐아파트) 거창군.읍거열로4길144-20,103동1306호(대우아파트)	윤석종(390/690) 윤석용(300/690)	
거창	마리	월계리	307-2 (307-8)	답	답			양산시주진1길43,102동1107호(주진동,로즈힐아파트)	윤석종(390/690)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07-2 (307-8)	답	답			거창군.읍거열로4길144-20,103동1306호(대우아파트)	윤석용(300/690)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07-3	답	답	666	666	부산시 사상구 대동로 104-8, 101동 1304호 (학장동, 목화아파트)	이인재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13-3	답	답	70	70		윤상오	
거창	마리	월계리	313	답	답	155	155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61	전정규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14	답	답	7	7	대구시 남구 남산동 273-5	윤상오	
거창	마리	월계리	317-2	답	답	86	86	경상남도진주시신안로163번길5-3 (이현동)	정태석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245-1 (245-7)	답	답	1,484	1,073	부산시기장군.읍차성로344번길13 107동1104호(한신아파트)	윤갑순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245 (245-6)	답	답	1,521	960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정순목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18-7	임야	임야, 법면	492	492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55	영승마을회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18-8 (318-11)	임야	임야, 법면	134	80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55	영승마을회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18-8 (318-8)	임야	임야, 법면		54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55	영승마을회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18-5 (318-10)	임야	답, 농경지	914	756	경남거창군상동168-4 (경남거창군마리면영승1길19)	최경태 (박남순)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18-5 (318-5)	임야	답, 농경지		158	경남거창군상동168-4 (경남거창군마리면영승1길19)	최경태 (박남순)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18-4	임야	임야, 법면	26	26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55	영승마을회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79	답	답	2,451	347	부산광역시 남구	정순목	보상

		리	(179-6)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거창	마리	월계리	179 (179-7)	답	답		44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정순목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179-5	답	답		29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정순목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180 (180-2)	답	답	678	5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39길 3, 802동 804호 (수서동, 동익아파트)	박길호	
거창	마리	월계리	182 (182-2)	답	답	2,878	37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75-145	윤석수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178 (178-2)	답	답	1,214	377	경상남도진주시신안로163번길5-3 (이현동)	정태석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174-3 (174-9)	답	답	1,103	24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8-6	윤석천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174-1 (174-8)	답	답	2,393	257	부산시부산진구성지로62번길8, 103동1703호(연지동노르웨이숲아파트)	강신선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174 (174-7)	답	답	1,521	531	경남거창군마리면영승리1012 (거창군거창읍소만2길62,101동202호(소만주공아파트))	우복룡 (우태일)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46	답	답, 경작지	49	49	부산시부산진구당감로17번길90, 113동101호(당감동무궁화아파트)	양재행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46-1	답	답, 경작지	33	33	부산시부산진구당감로17번길90, 113동101호(당감동무궁화아파트)	양재행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47	하천	제방	126	126	경남 창원시 북면 월계리 299	김동창	
거창	마리	월계리	348	하천	하천	1,078	1,078		권태현	
거창	마리	월계리	349	하천	하천	1,180	1,180		이운석	
거창	마리	월계리	344	답	답, 경작지	52	52	부산시부산진구당감로17번길90, 113동101호(당감동무궁화아파트)	양재행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44-2	답	답, 경작지	25	25	부산시부산진구당감로17번길90, 113동101호(당감동무궁화아파트)	양재행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43-1	답	답, 경작지	26	26	경남거창군마리면영승리1012 (거창군거창읍소만2길62,101동202호(소만주공아파트))	우복룡 (우태일)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43-5	답	제방	165	165	경남거창군마리면영승리1012 (거창군거창읍소만2길62,101동202호(소만주공아파트))	우복룡 (우태일)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105-1 (105-7)	답	답	840	539	경남거창군거창읍강변로177, 1202호(아진프라자)	이천근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42-5	답	제방	83	83		이순태	
거창	마리	월계리	342-1	답	하천	314	314	경남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452	이순태	
거창	마리	월계리	105	답	답	266	266	경남거창군거창읍죽전길24-17, 라동303호(상톧아파트)	김진주	보상
거창	마리	월계리	341-1	답	제방	435	435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40	전옥주	
거창	마리	월계리	351	하천	하천	380	380		이기진	
거창	마리	월계	105-1	답	답	301	301	경남거창군거창읍강변로1	이천근	보상

		리						77, 1202호(아진프라자)		
거창	마리	월계	102 (102-1)	전	전	1,091	100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371, 101동 704호(창동, 대우그린아파트)	박진석	보상
거창	마리	월계	690-1 (690-4)	답	답	1,599	6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65	유성종	보상
거창	마리	월계	690 (690-3)	답	답	1,555	76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65	유성종	보상
거창	마리	월계	689-2 (689-6)	답	답	1,763	191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005	전병우	보상
거창	마리	월계	689-1 (689-5)	답	답	3,267	593	부산시북구금곡대로166,6 05동2602호 (화명동,화명롯데캐슬카이 저)	윤종원	보상
거창	마리	월계	689 (689-4)	답	답	1,002	192		유영호	
거창	마리	월계	653-1 (653-5)	답	답	2,479	548		유영호	
거창	마리	월계	103-1	답	답	42	42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08-1	천	천	438	438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653 (653-4)	답	답	3,844	574	울산광역시남구삼호로68, 112동505호(무거동,삼호 주공아파트)	전순학	보상
거창	마리	월계	651-2 (651-7)	답	답	1,535	297	서울시동대문구장한로26 다길24,1001호 (장안동,르메르에이장안타 운2차아파트)	전병희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09-1	천	천 (갈대밭)	803	803	경기도남양주시진건읍진건 오남로41-19 -	전진규(2/11) 경상남도(9/1 1)	
거창	마리	월계	109-1	천	천 (갈대밭)	803	803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 41-19	전진규(2/11)	
거창	마리	월계	109-1	천	천 (갈대밭)	803	803	-	경상남도(9/1 1)	
거창	마리	월계	110	임	천	674	674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강상호	
거창	마리	월계	651-1 (651-6)	답	답	1,018	346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646	유재연	보상
거창	마리	월계	113-2	도	도	36	36	양주군 와부면 도곡리	박진규	
거창	마리	월계	112-1	천	천	45	45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77	전영목	
거창	마리	월계	113-4	답	답	1,498	1,498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12	천	천	593	593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1077	전영목	
거창	마리	월계	111	임	임	698	698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강상호	
거창	마리	월계	113-1	천	천	522	522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전원삼	
거창	마리	월계	114-2	도	도	96	96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임수석	
거창	마리	월계	114-3	도	도	119	119	말흘리	김상석 외3인	
거창	마리	월계	114-1	답	답	417	417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15-2	답	답	228	228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15-1	천	천	417	417		이일권	
거창	마리	월계	118-2	도	도	99	99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허정영	
거창	마리	월계	118-4	답	답	807	807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18-1	천	천	476	476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허정영	
거창	마리	월계	117	천	천	331	331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허정영	
거창	마리	월계	116-2	천	천	1,312	1,312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71	이일권	
거창	마리	월계	116-1	천	천	450	450	거창구 마리면 영승리 971	전귀술	
거창	마리	월계	119-2 (119-4)	도	도	89	44	김천군 김천읍 황금정 82	김창수	
거창	마리	월계	119-1	답	답	172	172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20-2	도	도	2	2	김천군 김천읍 황금정 82	김창수	
거창	마리	월계	120-6	답	답	215	215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20-3	천	천	532	532	김천군 김천읍 황금정	김기용	
거창	마리	월계	120-1	천	천	1,210	1,210	김천군 김천읍 황금정	김기용	
거창	마리	월계	120-5	답	답	331	331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21	천	천	853	853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71	김기병	
거창	마리	월계	123-2	도	도	79	79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변금술	
거창	마리	월계	123-1	전	전	23	23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변금술	
거창	마리	월계	120-4	답	답	50	50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22-3	답	답	83	83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122-2	천	천	357	357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71	전귀술	
거창	마리	월계	122-1	천	천	621	621	함양군 대지면 하원리 664	조영복	
거창	마리	월계	199-2	도	도	185	185	김천군 김천읍 황금정 82	김창수	
거창	마리	월계	199-1	답	답	631	631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월계	200	잡	잡	96	96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김기용	
거창	마리	월계	201	천	천	426	426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71	전귀술	
거창	마리	월계	203-4	도	도	122	122	함양군 대지면 하원리 664	조영복	
거창	마리	월계	203-2	천	천	288	288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71	전귀술	
거창	마리	월계	203-3	천	천	248	248	함양군 대지면 하원리 664	조영복	
거창	마리	월계	202	천	천	393	393	거창군마리면영승리	구일수	
거창	마리	월계	203-1	도	도	3	3	함양군 대지면 하원리 664	조영복	
거창	마리	월계	204-2	천	천	7	7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김응연	
거창	마리	월계	204-1	도	도	13	13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김응연	
거창	마리	월계	206	전	전	30	30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최덕수	
거창	마리	월계	205-1	도	도	17	17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옥석준	
거창	마리	월계	205-2	전	전	23	23		옥석준	
거창	마리	월계	207-2	천	천	615	615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임수석	
거창	마리	월계	207-1 (207-3)	도	도	83	42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임수석	
거창	마리	월계	208-2	천	천	291	291		김응연	
거창	마리	월계	208-1	도	도	20	20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김응연	
거창	마리	월계	209-2 (209-3)	도	도	60	33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장석구	
거창	마리	월계	209-1	천	천	112	112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장석구	
거창	마리	월계	211-2	도	도	63	63		이규성	
거창	마리	월계	211-1	천	천	119	119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이규성	
거창	마리	월계	212-2	도	도	20	20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옥석준	
거창	마리	월계	212-1	전	전	17	17	거창군 마리면 월계리	옥석준	
거창	마리	영승	779-2 (779-7)	답	답	3,295	382	부산시해운대구세실로126 ,102동903호 (좌동,해운대건영2차아파트)	이용찬	보상
거창	마리	영승	779-1 (779-6)	답	답	1,907	154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75-6	전순택	
거창	마리	영승	777 (777-1)	답	답	1,233	10	부산시북구백양대로1133-17,105호 (구포동,구포연립)	전삼용	보상
거창	마리	영승	781-2	답	답	522	522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영승	781-1 (781-6)	답	답	733	413	거창군거창읍거열로4길82 , 비동608호(궁전아파트)	윤귀언	
거창	마리	영승	780-2 (780-8)	답	답	2,178	705	거창군 마리면 월화길 156-45	변사원	보상
거창	마리	영승	780-1 (780-7)	답	답	1,726	258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91-3	전병성	보상
거창	마리	영승	782-2 (782-7)	답	답	2,846	249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91-3	전병성	보상
거창	마리	영승	782-1 (782-6)	답	답	2,396	224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51	임선여	
거창	마리	영승	1250	답	답	1,143	143	서울시양천구목동서로70,	정재근	보상

			(1250-2)					208동502호 (목동,목동신시가지아파트)		
거창	마리	영승	1249 (1249-2)	답	답	1,392	209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54-5	임기의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247 (1247-1)	답	답	1,322	189	서울시강남구헌릉로590길 100,104동1103호 (세곡동,세곡리엔아파트1단지)	이윤재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246 (1246-1)	답	답	2,621	287	서울시강서구국회대로59-25 (화곡동)	정수현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248-2	답	답	368	368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영승	1240 (1240-1)	답	답	3,441	195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8-11	윤복덕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239-2	답	답	7,603	33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041	이증노미	
거창	마리	영승	1245-2	답	답	364	364	-	경상남도	
거창	마리	영승	1244-4	답	답	287	287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85	최영자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236 (1236-1)	답	답	1,564	61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75-9	전병선	
거창	마리	영승	1234-2 (1234-3)	답	답	1,117	98	부산시연제구고분로242번길40 (연산동)	이희자	보상
거창	마리	영승	1235-2	도	도	30	30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985	김석모	
거창	마리	영승	1234-1	답	답	473	34	경남김해시분성로627번길 16-3,102동1202호 (안동,대아아파트)	윤석부	
거창	마리	영승	1232-1 (1234-6)	임	임	2,681	16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1213	정선전씨 사락공파종중 대표자전기택	보상

○ 보상조서(물건명세)

위치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종류	수량	단위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동						주 소	성 명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42	느티나무	30년생	2	주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	원장기마을회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42	철죽	10년생	78	주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	원장기마을회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주택	블럭조 스레트지붕 4.5*8.5+2*2.5	43.25	㎡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부속사	블럭조 스레트지붕 10*3+2*2	34	㎡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창고	블럭조 스레트지붕 5*2.5	12.5	㎡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부속사	블럭조 스레트지붕 5*3	15	㎡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가추	스레트 3*2	6	㎡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마당	콘크리트 5*5	25	㎡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임두리	보상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수도	-	1	식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장독대	콘크리트 2.5*3	7.5㎡	식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계단	철제 1.2*4	1	식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화단	블록 9*1.5	13.5 ㎡	식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감나무	30년생	1	주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오가피	20년생	20	군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	단풍나무	15년생	1	주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2	매실나무	30년생	1	주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3	느티나무	20년생	1	주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4	느티나무	5년생	4	주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5	축사	블럭조 스레트지붕 3*12	36	㎡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6	축사	블럭조 스레트지붕 5*4	20	㎡	인천광역시연수구먼우금로83길12,119동 103호(건영아파트) 010-6285-6770	임두리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416-2 611-1	울타리	목재및 철파이프 28*1H	28	m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2435, 103동4303호(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신철범	보상
거창	위천면	강천리	93-2	호두나무	8년생	1	주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798	이경애	
거창	위천면	남산리	491-1 611-41	창고		360	㎡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	강만복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491-1 611-41	물품이전비		1	식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	강만복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491-1 611-41	축산보상	한우	8	두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	강만복	보상
거창	거창읍	송정리	산123-4	분묘		1	기	거창군 위천면 황산1길 97-12	신진범	
거창	거창읍	송정리	산123-4	석축	자연석 7*0.5	3.5㎡	식	거창군 위천면 황산1길 97-12	신진범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하우스	20*7 이중구조, 연동형	140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관정	6인치 펌프(6ea)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매설탱크	2.5*2.5*2.5H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정기환	보상

					콘크리트			(가포농수산)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창고	5*5 판넬	25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방수포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전기시설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보수비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물품이전 비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화장실및 다용도실	2.5*4 판넬 수세식,가 추포함	10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주택	3*6 컨테이너 전기판넬, 씽크대포함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스카이라 이프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마당	6*3 콘크리트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수도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철재교량	3*2	2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우렁이시 설	8*6*2동, 방수포(80 mm),파이 프,잠금장 치등	96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우렁이시 설	7*6*6동, 방수포(80 mm),파이 프,잠금장 치등	252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싸이로	6ton 지지시설 포함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담장	3*1.5H	4.5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정화조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하우스	7*20 각파이프	140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창고및 사무실	3*6 컨테이너	18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냉동창고	5.5*6*3H 우레탄판넬 냉동시설포 함	33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전기시설	25KW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제품이전 비	5ton	3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물탱크	철재지주(3 *3)포함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싸이로	6ton 지지시설 포함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지하수	중형(6인치)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지하수	소형외곽 시설포함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우령이시설	노지 2*7 보수비포함	14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물품이전비	5ton	2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배관시설	PVC파이프 200mm*15m지하매설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교량	콘크리트 1.3*3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0	하우스	(7*8)+(7*5)+(7*3)	112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0	방수포	3*5*2ea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0	배관	30인치 지하매설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0	물품이전비	1ton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0	배관	60인치*50m*2ea,P관,지하매설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0	싸이로	6ton 지지시설 포함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7	하우스 (우령이 양식)	11*2 방수포,배관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7	하우스 (우령이 양식)	11*2 방수포,배관	1	식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3	창고	4*20*H3.5 차광및비닐	80	㎡	거창군마리면영승리 1324 (가포농수산)	정기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0	복숭아나무	17년	2	주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17	곽보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19	지하수	8인치, 전기, 장옥포함	1	식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60-5	김광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203-3	하우스	3*6 부직포	18	㎡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12	서순애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203-3	물품이전비		1	식	거창군 위천면 장터길 12	서순애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202-2	헛개나무	7년	10	주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87	신언복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울타리	30*1.3H 철판철파이프	39	㎡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대문	3*1.5 철재,철망	1	식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석물쉼터	2.5*2.8 석판,벤치(3m)	1	식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옻나무	10년생	15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제피나무	7년생	1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대추나무	15년생	2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엄나무	3년생	3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매실나무	7년생	2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두릅	7년생	72	군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오미자	8년생	7	m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기타수목	7년생	1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헛개나무	13년생	4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밤나무	15년생	2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엄나무	15년생	1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은행나무	15년생	1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창고	컨테이너 3*6	1	식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소나무	15년생	1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오엽송	7년생	1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회양목	7년생	1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주목	15년생	2	주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계사	철골조 그물망3*3	1	식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112-5 외	창고	철골조 비닐하우스 3*8	24	㎡	거창군 위천면 거차1길 75-8	장순남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22 22-3	울타리	탱자	48	m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271-4, 104동 402호(도동, 진우공원빌리지)	하수근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22 22-3	밤나무	10년생	12	주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271-4, 104동 402호(도동, 진우공원빌리지)	하수근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22 22-3	밤나무	40년생	8	주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271-4, 104동 402호(도동, 진우공원빌리지)	하수근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22 22-3	두릅	10년생	30	주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24길 271-4, 104동 402호(도동, 진우공원빌리지)	하수근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975-10 4	향나무	20년생	4	주	위천면 거차 2길 126	성낙진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975-10 4	소나무	7년생	12	주	위천면 거차 2길 126	성낙진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975-10 4	산초나무	7년생	5	주	위천면 거차 2길 126	성낙진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975-10 4	옻나무	10년생	4	주	위천면 거차 2길 126	성낙진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975-43	소나무	8-15년생	15	주	위천면 거차 2길 126	성낙진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975-43	옻나무	8-15년생	152	주	위천면 거차 2길 126	성낙진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화단	16*1.2*0.5H자연석	19.2	㎡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바닥쇄석	26*5	130	㎡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계단	1.2*2	2.4	㎡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덩굴시설	4*2 철재	8	㎡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엄나무	15년생	4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영산홍	10년생	8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주목	10년생	1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대추나무	7년생	1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제피나무	10년생	1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포도나무	7년생	3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소나무	20년생	2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약나무	10년생	5	군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선인장		1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오미자	10년생	3	주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더덕		1	㎡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남산리	104-1 104-46	기타약초		3	㎡	부산시 부산진구 성지로62번길 10, 104동 2104호(연지동, 연지청구아파트)	정종기 (전병인)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감나무	30년생	2	주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대추나무	20년생	1	주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대추나무	7년생	2	주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밤나무	30년생	4	주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두릅	7년생	72	군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유카	10년생	1	주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주목	20년생	1	주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엄나무	3년생	4	주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감나무	7년생	1	주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비닐하우스	15*5	75	㎡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611-15 외	창고 (비닐하우스)	3*7	21	㎡	거창읍 위천면 거차2길 95-51	박태호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167-3	호밀		868	㎡	거창군 마리면 율리 797	정창환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167-1	호밀		661	㎡	거창군 마리면 율리 797	정창환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167-2	호밀		106	㎡	거창군 마리면 율리 797	정창환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975-6	호밀		570	㎡	거창군 마리면 율리 797	정창환	보상
거창	위천면	남산리	975-31	호밀		1167	㎡	거창군 마리면 율리 797	정창환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창고	컨테이너 5*2	1	식	거창군 마리면 영승 중앙길 61	전정규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324	호두나무	10년생	1	주	거창군 마리면 영승 중앙길 61	전정규	보상
거창	위천면	장기리	22	탱자나무 울타리		18	m	거창군 거창읍 상동8길 15	신경애	보상
거창	마리면	율리	880	하우스	단동, 17*5	85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436	곽정아	보상
거창	마리면	율리	880	지하수	소형	2	식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436	곽정아	보상
거창	마리면	율리	880	물건이전비	-	1	식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436	곽정아	보상
거창	마리면	율리	880	건조기	-	1	식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436	곽정아	보상
거창	마리면	율리	880	수도대	콘크리트 2*1.5	1	식	경남 거창군 마리면 율리 436	곽정아	보상
거창	마리면	율리	940-7 외	개간비	-	600	㎡		경작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105	기타작물	지주대포함	21	㎡	경남거창군거창읍죽전길24-17, 라동303호(상톧아파트)	김진주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05	감나무	7년	13	주	경남거창군거창읍죽전길24-17, 라동303호(상톧아파트)	김진주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05-1 외	무궁화	4년	21	주	경남거창군거창읍강변로177, 1202호(아진프라자)	이천근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4-3 외	자두나무	7년	2	주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893	윤석천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4-3 외	두릅나무	10년	18	주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리 893	윤석천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하우스 (철재,점적관수, 수막,전기시설등)	8*140	1120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하우스 (철재,점적관수, 수막,전기시설등)	8*140	1120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하우스	6.5*100	650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건조기	-	1	식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지하수	중형	1	식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물건이전비	-	1	식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마늘	-	20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하우스	단동, 5.5*46	253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25	도라지 등	-	180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2길 57-4	정종수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9 하천쪽	감나무	7년	3	주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최붕만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9 하천쪽	대추나무	8년	1	주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최붕만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9 하천쪽	제피나무	8년	1	주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최붕만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9 하천쪽	기타수목	5~10년	3	주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최붕만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9 하천쪽	양파	5-2.6	13	㎡	-	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9	뽕나무	30년생	8	주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정순목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9	고염나무	10년	1	주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정순목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79	기타수목	30년	1	주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91번길 20(대연동)	정순목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245-3 외	개간비	-	1182	㎡		경작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317-2	작물	-	300	㎡	경남 진주시 이현동 29-27	정태석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316-1	뽕나무	20년	13	군	부산광역시해운대구 좌동1273, 해운대대창아파트105동101호	임영자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1234-1	대추나무	5년생	1	주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영승리	1234-1	가죽나무	10~20년생	15	군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영승리	1234-3	뽕나무	25년생	4	군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영승리	1250-2	산초나무	15년생	2	주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영승리	780-7	비닐하우스	12*7.5*32중골조,스프링쿨러, 점적관수, 개폐시설	270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91-3	전병성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780-7	배관파이프	30m*PVC 600mm	1	식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91-3	전병성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780-7	두릅나무	10년생	60	㎡	경남 거창군 마리면 영승중앙길 91-3	전병성	보상

거창	마리면	영승리	781-2	뽕나무	20년생	4	군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영승리	208-2	개나리	10년생, 8*1m	8	㎡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영승리	203-2	주차장	콘크리트 43*11	473	㎡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203-2	느티나무	100년생	2	주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0-5	뽕나무	20년생	16	군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0-5	자귀나무	25년생	1	주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0-3	뽕나무	30년생	4	군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118-4	매실나무	15년생	1	주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112	뽕나무	25년생	3	군		실소유자 확인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31	가죽나무	20~30년	115	군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8	이문행	보상
				옻나무	20~30년	57	주			
				매실나무	13년생	181	주			
				기타수목	10~25년생	12	주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31	중형관정	농사용전기 포함	1	식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8	이문행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31	장옥		1	식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8	이문행	보상
거창	마리면	월계리	1276-31	스프링쿨러등 시설일체		1	식	거창군 마리면 거안로 848	이문행	보상

거창군 공고 제2020-100호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주차장)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2008.9.25.)로 결정 고시된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7.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사업

○ 명 칭 :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주차장 정비사업

3. 사업규모(변경)

종류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 행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군 계획시설	교통시설	주차장	가조면 수월리 산11-1번지	5,208.0	4,810.0 4,853.0	1,446.61	1,446.61	거창군 고시 제2008-43호 (2008.9.25.)	

4.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수(산림과장)

5. 사업기간(변경)

○ 당초 : 2018. 8. 23. ~ 2019. 03. 31

○ 변경 : 2018. 8. 23. ~ 2020. 02. 28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

8.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9.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7,026	4,810					
				4,853	4,853					
1	가조면 수월리	산15-5	도	1,423	1,376		거창군			
				1,423	1,423					
2	가조면 수월리	산19-1	도	889	889		거창군			
				889	889					
3	가조면 수월리	산19-2	임	829	171		거창군			
		산19-5	임	175	175					
4	가조면 수월리	산19-4	임	747	747		거창군			
				747	747					
5	가조면 수월리	산199-1	차	706	685		거창군			
		산199-3	차	684	684					
6	가조면 수월리	산11-1	도	2,106	837		거창군			
		산11-12	도	841	841					
7	가조면 수월리	산11-2	임	326	105	가조면 사병리 334	김종훈 거창군			
		산11-13	임	94	94					

거창군 공고 제2020-101호

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337호(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2조에 따라 2021년 시행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1년도 정부지원을 받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16일

거 창 군 수

❒ **신청기간** : 2020. 1. 16. ~ 2019. 2. 14일까지

❒ **신청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종사자 등

❒ **신청서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총괄), 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등

❒ **지원조건·자격·방법 등** :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및 제출기관 문의

※ 사업시행지침서의 내용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s://uni.agrix.go.kr)에서도 확인 가능

❒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농업인 등 신청 ⇒ 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 ⇒ 농림축산식품부 심의 ⇒ 기획재정부 심의 ⇒ 국회 확정

❒ **안내기관** : 농업기술센터, 거창군청(사업담당부서), 읍·면사무소, 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 지역농협, 산림조합,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거창사무소

※ 기타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농업기술센터(총괄부서), 읍·면사무소, 또는 안내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농업축산과) ☎ 940-8122】

❒ 대상사업 : 125개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촌분야

1-1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 귀농귀촌 교육
2. 귀촌인 농산업창업 지원
3.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경상보조)
4. 청년귀농 장기교육

1-2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5.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7.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8.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9.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지원
10. 영농도우미 지원
11. 일반농산어촌개발
12. 일반농산어촌개발(신활력플러스)
13. 행복나눔이 지원

농업분야

2-1 경쟁력 제고

14. 경영실습임대농장
15. 곤충유통사업지원
16. 농업계학교 실습장(농대, 스마트실습시설지원)
17. 농업계학교 실습장(농고)
18. 농업농촌에너지 자립모델 실증지원
19. 농촌고용인력지원
20. 도시양봉 지원
21. 스마트팜확산지원(권역별현장지원센터)
22.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사업 공모지원

2-2 생산기반확충

25.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26.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27.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28.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9. 농촌용수개발
30. 배수개선(지자체)
31. 사료용곤충산업화지원
32. 수리시설개보수
3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34. 유기농업자재지원
35. 유기질비료 지원
36. 토양개량제 지원
37. 한발대비용수개발

2-3 농가경영안정
38. 경관보전직불(지자체)
39. 농기계임대
40. 농업자금이차보전
4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42. 친환경농업직불

2-4 국제협력협상
43.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

식량분야

3-1 경쟁력 제고
4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46.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47.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3-2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48.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융자)
49.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축산분야

4-1 경쟁력 제고
50. 말산업 육성지원
5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52.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53.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
54. 축사시설현대화(민간)
55.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56. 축산자조금 운영
4-2 생산기반확충
57. CCTV 등 방역인프라(양봉)
58. 가축분뇨 처리 지원
59.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60.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6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62.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4-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6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64. 친환경축산직불

식품분야

5-1 경쟁력 제고
65.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6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5-2 생산기반확충
67.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68. 전통주산업진흥
69.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70. 찾아가는 양조장
5-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7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72. GAP 생산여건조성
73.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74.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75.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유통원예분야

6-1 경쟁력 제고
76. 과실브랜드 육성
77.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7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6-2 생산기반확충
79.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8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81.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8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8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84.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85. 과수우량묘목 생산 지원
86.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87. 과원규모화(융자)
88.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 단지조성
8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9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91. 시설원예현대화
92. 유통시설현대화
93.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시설현대화
9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95.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96.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6-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97. 공동선별비지원
9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99. 직거래장터 지원
100.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홍보 지원
101. 물류기기 공동 이용지원
102.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103.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104. 산지유통활성화자금
105.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106. 자조금지원
107.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융자)
108. 직매장 지원
109. 채소가격안정지원

임업분야

7-1 생산기반확충

110. 조림(지자체)
111. 정책숲가꾸기
112. 공공산림가꾸기
113. 양묘시설현대화
114.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117. 수출기반구축
118.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119.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120. 목재펠릿 보급사업
12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122. 임산물 상품화지원
123. 목재산업단지 조성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거창군 공고 제2020 -106호

공동주택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위탁지정 공고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89조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5항내지7항에 따라 공동주택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업무를 위탁지정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제95조 제10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7.

거 창 군 수

1. 위탁사무별 수탁기관의 현황

위탁사무	교육대상	위탁기관/소재지	비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방범교육	시설물 경비책임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에 관한 안전 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에 관한 안전 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 금천구 벚꽃로 244 벽산디지털밸리5차 15층 1514호	

2.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 (1년)

3. 문 의 처 :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055-940-3602)

거창군 공고 제2020-108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거창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2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가. 건축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정함

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하여 정비

3. 주요내용

가.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나. 법령위임 범위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 규정 삭제

1)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 중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안 제6조제2항제4호)

2) 이행강제금 감경 위반행위 중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안 제42조제2항제1호)

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적용완화 규정 축소(안 제15조제1호·제2호)

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기준 추가(안 제23조)

마. 가설건축물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축소(안 제26조제4호)

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법령 확인·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34조제3항·제4항)

1) 위임행정규칙인 국토교통부고시 조경기준에 따르면 되는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

사. 법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규정 변경(안 제42조제1항제3항

1) 이행강제금의 감경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85제곱미터 이하에서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됨에 따라 그 내용 정비

2)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변경(안제42조제3항)

가) 총 부과횟수 5회 ⇒ 1년에 한 번

아. 공작물 범위의 모호한 기준 정비(안 제43조제1항제1호・제2호, 제2항)

1) 삭제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0. 01. 21. ~ 2020. 02. 10.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1)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도시건축과

2) 전화번호 : 055)940-3602, FAX : 055)940-3579

3) 전자우편 : promethaus@korea.kr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거창군 건축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 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 조 제목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을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비용”을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한다.”를 “함”으로 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아니하다.”를 “아니함”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제26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제6호를 제4호·제5호로 한다.

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3항·제4항을 삭제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를 제1호·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제43조제2항 중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를 “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1. 제조시설: 레미콘·아스콘·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제4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등) ①~② (생 략) <신 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며,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삭제 (2017.1.25.)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2.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

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4.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삭 제>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② 간사는 건축사업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동·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도계장은 제외한다) 2.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15조(도로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완화)** 법 제5조 및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거창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함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	**제26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삭 제>

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5.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기준은 매년 1월에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제31조(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지급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4조(대지의 조경)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 면적기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이외의 용도와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저층부분 및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의 3분의 2의 면적	**제34조(대지의 조경)**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까지로 한다. 4.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을 법 제4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 조경시설공간으로 대체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3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3과 같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단서에 따라 제1항의 경우 총 부과 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② 영 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삭 제>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	**제43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아스콘·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시설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를 말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 2019. 11. 1] [법률 제16415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9. 4. 30.>

1.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 2020. 5. 1.] 제13조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5. 28., 2019. 4. 30.> [시행일 : 2020. 5. 1.] 제19조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시행일 : 2020.4.24.] 제79조제1항, 제79조제5항, 제79조제6항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 5. 30., 2015. 8. 11., 2019. 4. 23.>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2019. 4. 2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 4. 30.>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일 : 2020. 5. 1.] 제83조

부칙 <제16380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항·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관 진입창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생략)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9. 11. 7] [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일부개정]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2014. 11. 11.>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6. 1. 19.>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4. 11. 28., 2018. 9. 4.>

1.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 및 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삭제 <2014. 11. 11.>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2014. 11. 28.>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⑥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5. 9. 22., 2018. 9. 4., 2019. 10. 22.>

1. 제5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1조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경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나.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5조, 제50조의2, 제53조,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 제61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4., 2018. 9. 4.>

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9. 4.>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전문개정 2008. 10. 29.]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30.>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법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개정 2019. 8. 6.>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위 반 건 축 물	해당 법조문	이행강제금의 금액
1.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건축물	법 제11조, 법 제14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의2.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5조	시가표준액(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조경의무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7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8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법령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한 건축물		
9. 법령등에 적합하지 않은 마감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0.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2.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13.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로서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건축조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 조경기준

[시행 2018. 7. 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13호, 2018. 7.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6. 〈 삭 제 〉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녹엽 부분을 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을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교목"이라 함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18.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측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는 교목을 말한다.
19. "낙엽교목"이라 함은 참나무·밤나무 등과 같이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봄에 새잎이 나는 교목을 말한다.
20. "관목"이라 함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다.
21.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수선화·백합 등과 같이 초본(草本)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을 말한다.
22.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3.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연못·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제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광장·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그늘식재) 〈 삭 제 〉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제8조의2(식재수종의 품질) ①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록교목은 줄기가 곧고 잔 가지의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상록관목은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3. 낙엽교목은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4. 낙엽관목은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식재하려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화류는 가급적 주변 경관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 초본류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 때 생육지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피식물은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조경시설의 설치

제9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차폐식재를 하지 않을 수 있으

나 미관 향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차폐식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0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 또는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충분히 차단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제11조(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3조(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해당 토심에 적합한 식물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인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 ·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수 및 배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발코니·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413호, 2018. 7.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의견제시 사례** 가. 조문 정비(안 제6조제1항)

나. 법령위임 범위 벗어나 법령위배 소지 규정 삭제

1)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사유 중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안 제6조제2항제4호)

2) 이행강제금 감경 위반행위 중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안 제42조제2항제1호)

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적용완화 규정 축소(안 제15조제1호·제2호)

라.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산정기준 추가(안 제23조)

마. 가설건축물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축소(안 제26조제4호)

바. 조례로 위임되지 않은 법령 확인·재기재 사항 삭제(안 제34조제3항·제4항)

안건번호	의견 18-0025	요청기관	경상남도	회신일자	2018. 3. 13.

• 질의요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에 대한 의견진술 및 과태료 감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려는 경우에 창원시의 조례로 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 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여기서 "법령의 범위 안"이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를 의미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참조),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12153 판결례 참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지방자치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은 법령·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규정할 수 있지만,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 경우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기관위임사무 여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상위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거창군 공고 제2020-109호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제1항에 따라 2020. 1. 11. ~ 2020. 1. 17.까지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0. 1. 20.

거 창 군 수

□ 공고기간 : 2020. 1. 21. ~ 1. 25.

□ 교섭요구 노동조합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자	조합원수	비 고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정대은	2020. 1. 6.	79명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거창군공무직지회

□ 이의신청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우리 군 행정과(서무담당)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행정과 서무담당(☎055-940-3192)으로 문의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0 - 115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7호선)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67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21.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비고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기점	종점		
교통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67호선)	거창	김천	소로	2	67	190	8	1,393	거창읍 김천리 266-2	거창읍 김천리 261-1	경고256호 ('77.4.25.)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우편번호 50132)
- 사 업 명 : 김천리 스카이마트 주변(소로2-67호선) 개설공사

3.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3)

4.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12. 31.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 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6,571	1,393					
1	거창읍 김천리	266 - 2	전	17	17		거창군			
2	“	265 - 4	전	248	248		거창군			
3	“	266 - 1	전	403	27	경남 함양군 안의면	구*우			
4	“	265 - 2	전	139	139		거창군			
5	“	265 - 1	답	430	430		거창군			
6	“	267 - 13	대	106	106		거창군			
7	“	261 - 2	답	2,054	32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택			
8	“	261 - 1	답	1,806	48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이*택			

6.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또는 우편, FAX 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제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 성 명 :

○ 연 락 처 :

○ 기타 참고사항.

거창군 공고 제2020-118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가. 거창 일반산업단지 및 승강기전문농공단지 입주 기업체 및 사업장에 큰 부담이 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입주 희망기업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나. 사용료 산정 방법 등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위임하여 필요에 따라 신속한 입법조치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절차나 서식 등을 규칙으로 위임

1) 폐수 등 유입처리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안 제3조제2항)

2) 배수설비 개시 신고(안 제6조)

3) 사용료 부과절차(안 제10조제2항)

나. 사용료 산정 방법 규칙으로 위임(안 제10조제1항)

다. 사용료 지원금 산정 기준 규칙으로 위임(안 제11조제3항)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1. ~ 2020. 2. 10.(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 주소 : (50132)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363
- FAX : 055-940-367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제4항·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중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를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를 “지원금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제3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려는 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승인변경 신청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삭 제>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6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부담금의 산정 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 규칙으로 이동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군수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	**제1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월별로 부과한다.

의 사용료 등을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별표 2의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1조(사용료 부담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입주지연으로 인한 초기입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용료 일부를 제2항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가동률이 100분의 60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산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605호, 2019. 11.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000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7. 1. 17., 2018. 10. 16.>

1. "물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이하 "수질"이라 한다)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水生態系, 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수질오염원"이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4의2. "폐수관로"란 폐수를 사업장에서 제17호의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설치·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면"(不透水面)이란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은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비점오염저감시설"이란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호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滿水位)[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計劃洪水位)를 말한다]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보(洑) 또는 둑(「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시설은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5. "수면관리자"란 다른 법령에 따라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5의2. "수생태계 건강성"이란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화학적·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16. "상수원호소"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그 호소의 물을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17. "공공폐수처리시설"이란 공공폐수처리구역의 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공공폐수처리구역"이란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19.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물놀이형 유기시설(遊技施設) 또는 유기기구(遊技機具)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수

영장

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물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제48조의3(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관

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제5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③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지표·방법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 27.>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결과 우수한 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등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시행자는 사업장의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폐수관로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폐수관로 및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한국환경공단등은 유입되는 폐수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 제68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0. 10. 17] [대통령령 제30126호, 2019. 10. 15, 일부개정]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7.>

1.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공공폐수처리시설: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①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그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1. 계획비 및 조사비
2. 본 공사비 및 부대공사비
3. 용지비(보상비를 포함한다)
4. 조작비 및 유지관리비
5. 장비 구입비 및 설치비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은 토지, 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을 처분하여 얻는 수입금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③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은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범위에서 정한다. <신설 2017. 1. 17.>

1. 인건비
2. 전력 사용료
3. 폐수처리 등에 필요한 약품 구입비
4. 슬러지(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등을 말한다) 처리비
5. 시설개선충당금
6. 사무관리비, 지급이자 및 그 밖의 부대비용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 등) ① 시행자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19. 10. 15.>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5.>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시행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의 기간은 유예처분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징수유예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행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받은 자에게 징수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0. 15.]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0. 17.>

수질오염물질(제3조 관련)

1. 구리와 그 화합물
2. 납과 그 화합물
3. 니켈과 그 화합물
4. 총 대장균군
5. 망간과 그 화합물
6. 바륨화합물
7. 부유물질
8. 삭제 <2019. 10. 17.>

9. 비소와 그 화합물
10. 산과 알칼리류
11. 색소
12. 세제류
13. 셀레늄과 그 화합물
14. 수은과 그 화합물
15. 시안화합물
16. 아연과 그 화합물
17. 염소화합물
18. 유기물질
19. 삭제 <2019. 10. 17.>
20. 유류(동·식물성을 포함한다)
21. 인화합물
22. 주석과 그 화합물
23. 질소화합물
24. 철과 그 화합물
25. 카드뮴과 그 화합물
26. 크롬과 그 화합물
27. 불소화합물
28. 페놀류
29. 페놀
30. 펜타클로로페놀
31. 황과 그 화합물
32. 유기인 화합물
33. 6가크롬 화합물
34.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5. 트리클로로에틸렌
36.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37. 벤젠
38. 사염화탄소
39. 디클로로메탄
40. 1, 1-디클로로에틸렌
41. 1, 2-디클로로에탄
42. 클로로포름
43. 생태독성물질(물벼룩에 대한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만 해당한다)
44. 1,4-다이옥산
45.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46. 염화비닐
47. 아크릴로니트릴
48. 브로모포름
49. 퍼클로레이트
50. 아크릴아미드
51. 나프탈렌

52. 폼알데하이드
53. 에피클로로하이드린
54. 톨루엔
55. 자일렌
56. 스티렌
57.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58. 안티몬

거창군 공고 제2020-120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21일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수 등 유입 처리 승인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를 정함(안 제2조)

나. 폐수 등 배출 신고 절차를 정함(안 제3조)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정함(안 제4조)

라. 사용료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5조, 별표 1)

마. 사용료 지원금 산정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별표 2)

3. 시행규칙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20. 1. 21. ~ 2020. 2. 10.(20일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 방문 등

- 주소 : (50132)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363
- FAX : 055-940-3679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규칙명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수 등 유입 처리의 승인 등) 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폐수 등 배출 신고)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5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의 부과·징수)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산정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의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용료 산정기준(제6조 관련)

1. 산정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처리시설 사용료(BS)

$$BS = M \times \left\{ 0.5 \times \frac{BLi}{\sum_{i=1}^{n} BLi} + 0.5 \times \frac{F(Li)}{\sum_{i=1}^{n} F(Li)} \right\}$$

가. M: 월간 사용료 = 유지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1) 유지관리비 :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 Fi × R

· Ei: 시설 설치 비용

· Fi: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충당금 적립률

$$Fi = \frac{2}{1{,}000} \times \frac{\text{월간 일평균유입량}(㎥/\text{일})}{\text{시설용량}(㎥/\text{일})}$$

· R: 물가상승률(전년도 물가지수 ÷ 준공년도 물가지수)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지수

나. BLi: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유입승인 오염 부하량

1) BLi = 유량(㎥/일)×[BOD+COD+SS+T-N+T-P농도(㎎/ℓ)]/1,000

2)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유입 승인받은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그리고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입 처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다. F(Li): 개별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F(Li) = a \cdot Qi \times \left(\frac{BODi + CODi}{2} + SSi + T-Ni + T-Pi \right) / 1000$$

1) Qi: 배출 사업장의 오수 및 폐수 등의 실제 배출유량

2) BODi, CODi, SSi, T-Ni, T-Pi: 개별사업장의 BOD, COD, SS, T-N,

T-P 농도

3) a: 유량 누진계수

유 량 (㎥/일)	a
Qi ≤ 200	1.0
200 < Qi ≤ 500	1.1
500 < Qi	1.2

라. 오수·폐수 배출 사업자의 산정된 실제 납부금액이 하수도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 하수도 사용료의 1.2배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측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 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군수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소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 등)의 측정은 월 2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 사

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다만,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가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배출허용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 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 사업자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 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2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군수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2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자는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COD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SS 100 mg/ℓ(기숙사 200 mg/ℓ)
- T-N 30 mg/ℓ(기숙사 40 mg/ℓ)
- T-P 3 mg/ℓ(기숙사 4 mg/ℓ)

[별표 2]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제7조 관련)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

$$CS = a \times Qi \times Wi$$

가. CS: 월간 사용료

나. a: 누진계수

(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다. Qi: 업소별 월간 배출유량

라. Wi: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지원 가격(원/㎥)

$$Wi = \frac{\text{연간유지관리비(원)}}{30(\text{일}) \times 12\text{개월}} \times \frac{1}{\text{월간 일평균유입량(㎥/일)}}$$

2. 시설개선충당금 산정공식

가.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

$$\text{개별 사업장 시설개선충당금} = \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 \times \frac{Qi\ \text{㎥/일(개별사업장 배출유량)}}{\sum Qi\ \text{㎥/일(전체사업장 배출유량)}}$$

$$\text{월간 시설개선충당금} = \text{재산가액(원)} \times \frac{2}{1{,}000} \times \frac{\text{월간 일평균유입량(㎥/일)}}{\text{시설용량(㎥/일)}}$$

나.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사용료 산출기준 [별표 1]의 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의 시설개선충당금 항목을 적용한다.)

다. 배출유량: 사용료 산정기준[별표 1]의 2. 실제 배출되는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의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3. 사용료 지원금 산정기준

오수배출업소의 사용료 지원금은 거창군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기준에

따른 요금과 사업자별 시설개선충당금(2. 시설개선충당금 산정공식)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수·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기준(1. 폐수배출사업자 사용료 산정공식)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사업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업 종		주 생 산 품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건물면적(동별)		부 지 면 적	㎡

승인 신청 사항

1. 월간 일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일
2. 월간 일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일평균 오수배출량: 톤/일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신청인(신고인) 제출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1부. 2. 공장건물 배치도 1부.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각 1부.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명세서 1부. 5. 오수 및 폐수 배출량 명세서 1부. 6. 월간 오수배출량 산출근거 1부 7.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의 처리계획 1부.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승 인 번 호 제 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		
상호 또는 명칭			
성 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승인내용 및 조건

○ 승인내용

1. 월간 하루평균 폐수 등 배출량: 톤/하루
2. 월간 하루평균 폐수배출농도

BOD: ㎎/ℓ, COD: ㎎/ℓ, SS: ㎎/ℓ, T-N: ㎎/ℓ,

T-P: ㎎/ℓ, 그 밖의 오염물질:

3. 월간 하루평균 오수배출량: 톤/하루
4. 하루평균 오염 부하량: ㎏

○ 조건: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오수·폐수 등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를 (변경)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서

신고인	상호 또는 명칭	
	성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		

「거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개시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거 창 군 수 귀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